

III. 국내 생명보험회사 퇴출 분석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퇴출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몇 년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퇴출한 회사의 대부분은 1987년 국내 보험시장이 개방되면서 진입한 신설 생명보험회사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1980년대말 생명보험 산업의 시장개방 현황 및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프로필을 요약하고, 시장개방 시점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회사 퇴출 규제 의 변화를 분석한 후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한다.

1.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과 개방

가. 경제발전과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

자립경제의 싹을 잘라버린 35년의 일제 강점기와 한반도를 초토화시켜 버린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는 암흑기로 접어들었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에서 보듯이 국내 1인당 GNP는 1963년 100달러에서, 1973년 396달러, 1983년 2,014달러, 1993년 7,811달러, 1996년에는 11,380달러로 가파르게 성장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1인당 GNI는 7,355달러로 급락하였고 1999년에도 1인당 GNI는 1만 달러를 넘지 못하는 침체기가 있기는 했지만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여 2004년말 현재 1인당 GNI는 14,16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거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보험시장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실물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금융기관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서민의 저축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표 III-1> 국민총생산과 1인당 GNP(GNI)추이¹⁾

연 도	국민총생산 (억달러)	1인당GNP (달러)	연 도	국민총생산 (억달러)	1인당GNP (달러)
'63	27	100	'89	2,086	3,767
'65	30	105	'91	2,949	6,810
'67	43	142	'93	3,452	7,811
'69	66	210	'95	4,881	10,823
'71	95	289	'96	5,183	11,380
'73	137	396	'97	4,740	10,307
'75	209	594	'98	3,461	7,355
'77	368	1,011	'99	4,452	9,438
'79	616	1,647	'00	5,118	10,841
'81	671	1,741	'01	4,820	10,160
'83	800	2,014	'02	5,469	11,499
'85	877	2,146	'03	6,080	12,720
'87	1,338	2,873	'04	6,081	14,162

주 :1) 98년부터 GNP 대신 GDP 사용함, 1인당 GNP 대신 1인당 GNI 사용함.

자료 : 통계청 통계자료실 국민계정지표

<표 III-2>는 국민 1인당 및 가구당 생명보험 보유계약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1962년에는 국민 1인당 생명보험 보유계약액이 1,200원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843만8천원에 도달하여 무려 7,032배가 증가하였다. 가구당 보유계약액도 1962년 6,900원에서 1990년에는 31,304천원으로 4,537배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은 구미 보험회사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는 1980년대 미국의 통상 압력과 함께 보험시장 개방 압력으로 구체화되었다.

<표 III-2> 1인당 및 가구당 생명보험 보유계약 추이¹⁾

(단위 : 천원)

구분	1인당 보유계약액	가구당 보유계약액
'62	1.2	6.9
'70	8.4	45.2
'75	32.5	166.5
'80	304.1	1,426
'85	1,951	7,982
'90	8,437	31,304
'96	11,109	44,437
'97	12,325	49,230
'98	13,186	52,743
'99	15,157	60,630
'00	17,632	70,527
'02	23,770	95,080
'04	27,093	108,372

주 : 1) 85년도 자료부터는 1인당 보유계약액*4=가구당 보유계약액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나. 생명보험시장의 대외 개방

1980년대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한미 간의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국내시장,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다고 평가되었던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는 1983년 11월 레이건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공식화되었다. 이후 1984년 제3, 4차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미국측은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한국보험시장 진출 허용을 재차 요구하면서 생명보험시장 개방, 화재보험에 대한 국내 보험회사들의 풀 제도 폐지 및 외국보험회사들의 즉시 참여 등을 요구하였다.

그 후 보험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면서 미국의 라이나생명(LINA: Life Insurance Company of North America)과 아메리칸 라이프 인슈어런스 컴퍼니(ALICO: American Life Insurance Company)는 1986년 11월에 지점설치를 신청하였고 1987년 4월22일 LINA, 1987년5월18일 ALICO에게 지점설치를 허가하였다.(생보협회, 2000) 이 두 외국사가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에 지점형태로 진출한 이후 <표 III-3>과 같이 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합작, 지점 또는 현지법인 형태로 추가로 진출하였고, 캐나다, 네덜란드 및 프랑스계 생명보험회사가 합작 또는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였다.

<표 III-3> 외국생명보험회사 국내 진입 현황

회사명	설립일	납입 자본금	본사국적	진출형태	비고
라이나	87.4.22	-	미국	지점	
알리코	87.5.18	-	미국	지점	97.아메리카생명에 계약이전
아플락	88.7.12	-	미국	지점	91.대한교육보험에 계약이전
조지아	88.9.1	-	미국	지점	91.네덜란드생명에 계약이전
한국푸르덴셜	89.6.16	100억원	미국	현지법인	97.푸르덴셜생명으로 상호변경
네덜란드	91.9.9	200억원	네덜란드	현지법인	91.조지아생명 계약인수 99.ING생명으로 상호변경
AGF	91.11.25	100억원	프랑스	현지법인	92.프랑스생명으로 상호변경
아메리카	97.3.25	-	미국	지점	97.알리코생명 계약인수

자료 : 생명보험 50년사(2003)를 중심으로 정리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진출은 현지법인 및 지점 외에도 국내 자본과 합작으로도 이루어 졌는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원칙은 외국생명보험회사 지점 허가 기준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주주의 자본력과 생명보험회사업 경험이 허가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내국인 주주의 허가 기준은 경제 집중력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상위 15위내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을 제외하였고 16-30위는 합작사의 소유지분 50% 미만을 소유하도록 하였다.

합작사의 납입자본금은 본사가 지방인 경우 50억원이며 서울인 경우에는 60억원으로 구분하였다.

<표 III-4> 합작사 설립 현황과 소유지분 구조

회사명	설립일	납입 자본금	외국사 지분	외국사	내국사
동부에트나	89.4.14	100억원	51%	Atena International(미)	동부그룹
동양베네페트	89.4.20	60억원	49%	Mutual Benefit Life(미)	동양그룹
코오롱메트	89.6.1	70억원	60%	Metropolitan Life(미)	코오롱그룹
고려씨엠	89.6.27	60억원	50%	Connecticut Mutual Life(미)	고려통상 (고려증권)
삼신올스테이트	89.8.9	100억원	50%	Allstate International(미)	삼환기업
영풍메뉴라이프	90.6.18	100억원	50%	Manulife (캐나다)	영풍그룹
고합뉴욕	92.2.25	65억원	51%	New York Life(미)	고려합섬

자료 : 생명보험 50년사(2003)를 중심으로 정리

다. 생명보험시장의 대내 개방

정부는 수십년동안 국내 생보시장을 외국에 개방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1986년까지 내국인에게도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84년 6월21일 대구 상공회의소의 생명보험회사 설립건의에 대한 회신 및 1985년 정기국회에서의 국내생명보험회사 신설허용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서도 여건 미성숙으로 허용불가 입장을 견지해왔다.(생명보험협회, 2000) 그러나 1985년 이후 보험시장 개방관련 정책 기조는 선대내·후대의 개방으로 급선회하여 1988년부터 22개의 내국사를 허가하였는데 이는 순수 외국 생명보험회사(지점포함) 5개를 합치면 27개의 새로운 생명보험회사가 6개의 기존 생명보험회사가 과점적으로 점유하던 시장으로 진입하게 된다. 생보시장 참여자의 이러한 급격한 확대는 정부의 생명보험회사 시장 개방이 장기적인 계획이나 산업전략

측면에서 마련되었다가 보다는 미국 등의 외부 압력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생보시장을 개방하면서 국가 경제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신설 생명보험회사를 선별했다. 정부의 신설 생명보험회사 허가 기준은 당시 정부의 정책 목표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정책적 목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하에서는 신설 생명보험회사 허가 기준(전국사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986년 5월30일 전국규모 순수내국 생명보험회사의 신설 허가기준이 발표되면서 전국사 주주자격 결격자도 규정되었는데 15대 재벌의 계열주는 참여할 수 없고 16-30대 재벌은 50% 미만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 전국규모 순수내국 생명보험회사(이하 전국사)의 허가 원칙은 대규모 기업집단 배제를 통한 경제력 집중외에,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겠다는 것, 참여하는 전국사가 자본력과 경영능력이 있어야 하고 참여 자본이 금융업에 전업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기업 자본 보다 개인 자본을 선호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표 III-5>와 같이 세부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제시하였다.(생명보험협회, 1992)

6) 주주 자격 결격자는 다음과 같았음. 1)15대 재벌의 계열주(16~30대 재벌은 50% 미만 출자 허용), 2)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3)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업주 또는 계열주, 4) 최근 3년동안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자, 5) 위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자(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에서 규정)에 있는 자.

<표 III-5> 신설 전국사의 허가 평가 항목 및 가중치

항 목	가 중 치
금 융 전 업	20%
개 인 출 자	16%
지 방 본 사	16%
출 자 능 력	16%
경 영 능 력	16%
출 자 의 건 전 성	16%
합 계	100%

그러면 신설 전국사의 6개 평가항목에 대한 각각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금융전업 항목

(가) 평가기준

허가를 신청한 생명보험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그 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열법인을 포함함. 이하 “대주주”라 함)가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했는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만을 경영하는 경우는 상등급,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는 중등급 그리고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하등급을 주도록 하여 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를 우대하였다.

(나) 평가기준 분석

금융전업 항목은 가중치가 20%로 6개의 항목 중 가장 높아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다섯 번째 평가항목인 ‘금융업 경영능력’ 가중치 16%를 같이 고려하면 당시 정책당국은 금융업 관련 자본이 생명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선진 외국 생명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에 경험이 있는 자본이 내국 생명보험회사를 신설하여 경쟁력을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측면과 함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가급적이면 분리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였는데 이러한 정책적 의도는 최근 금융겸업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개인출자 항목

(가) 평가기준

신청 생명보험회사의 출자지분의 51% 이상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2등급(상, 중)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나) 평가기준 분석

개인출자 항목은 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과 부실화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의 여유자금을 생명보험회사 신설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목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불투명한 회계 및 금융 관행 하에서 타인 명의를 통한 우회출자 등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책 목표의 달성은 애초부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신설 생명보험회사들이 현금흐름(Cashflow)영업을 추구함에 따라 지속적인 증자가 필요해지면서 개인출자 항목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컸다고 볼 수 있다.

(3)지방본사 항목

(가) 평가기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금융자산의 지역 간 균형배분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회사의 본사가 서울인지, 지방인지, 여부에 따라 2등급(상, 중)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나) 평가기준 분석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목표였지만 단순히 본사를 지방에 두어야 한다는 조항만으로 '수도권 경제력 분산'이라는 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본다. 신설된 내국사 중 지방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는 전국사인 한덕과 지방 생명보험회사 9개가 있었지만 2005년말 현재까지 원래 소유구조를 유지하면서 생존해 있는 회사는 없다. 부산생명(현재 럭키생명)과 광주생명(금호생명), 대전생명(SK생명)은 자금력이 풍부한 그룹사가 인수하면서 생존했지만 지방에 본사를 둔 나머지 7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4) 출자능력 항목

(가) 평가기준

출자주주의 자본조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출자주주의 자금조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재산과 소득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재산세(과거의 부의 축적정도) 및 소득세(현재의 소득수준) 납세실적을 평가 항목으로 사용하였다. 허가신청 회사간의 출자능력 비교는 51%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주주(주주 1인이 51%이상을 출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51%를 출자한 상위지분의 주주집단)의 최근 1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납세실적을 순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법규상 규정된 타법인에의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하려는 "한양생명"과 지방생명보험회사로 허가 할 계획인 "충북생명"을 제외한 15개사를 기준으로 함). 이 결과에 따라 1~5위는 상등급, 6~10위는 중등급 그리고 11~15위는 하등급을 부여하였다.

(나) 평가기준 분석

출자능력은 진입 생명보험회사에게 중요한 기준중 하나다. 특히 생

명보험회사업의 이익 환수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며 생보시장 진입 이후 통상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항목은 진입 평가 항목의 핵심이다.⁷⁾ 특히 80년대 당시에는 언더라이팅을 통한 수익 시현보다는 Cashflow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영업이 확장될수록 출자능력은 더욱 필요하였다. 따라서 가중치를 16%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분석이다.

(5) 경영능력 항목

(가) 평가기준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 증권, 보험, 단자, 종금등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대주주(1인인 경우 당해인, 다수인 경우 과반수이상)가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상등급을, 대주주가 다수인 경우 1인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중등급을 그리고 대주주가 금융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는 하등급을 부여하였다.

(나) 평가기준 분석

신설 생명보험회사 허가 시 대주주의 금융업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이다. 이 항목의 가중치는 16%로 평가기준의 첫째 항목인 '금융전업'항목과 합칠 경우 총 36%로 타 항목의 2배가 넘는다. 이는 당시 정책당국이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면서 금융산업의 시너지를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금융겸업화가 가속화되는 금융산업의 세계적 추이와 국내 현실을 적절히 고려한 항목이었다고 분석된다.

7) 그러나 영위하는 종목과 자산운용 등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여 RBC와 같은 자기자본 규제를 한다면 신설사 진입시 출자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지급여력 등과 같은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출자능력은 핵심적인 기준이 될수 밖에 없다.

(6) 출자 건전성 항목

(가) 평가기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경영 내용이 동종업계 내에서 우수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모두 동업종평균이상이고 배당을 한 경우는 상등급, 상기 3지표 중 2개가 충족되는 경우는 중등급 그리고 상기 3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하등급을 부여하였다. 비금융기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주력기업(매출액기준)의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내에서 양호한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 비율의 50% 이하인 경우는 상등급,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 비율 이하인 경우는 중등급 그리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등급을 부여하였다.

(나) 평가기준 분석

보험회사 설립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으로 보험회사 설립 후 건전하게 경영을 영위하는지 여부 및 계약자의 이익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여부의 평가는 당해 보험회사에 출자할 대주주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종 업계 내에서 안정적인 시장기반과 건실한 경영내용 및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지 여부로 평가하였다.

정부는 상기 다섯 개의 항목별 점수 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허가신청자를 3등급(상, 중, 하)로 구분하고, 점수배정은 3:2:1로 하였다. 다만, 3등급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지방본사와 개인출자의 경우는 2등급(상, 중)으로 구분하고 점수는 3:2로 배정하였다. 단계적인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6개의 전국사(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신한생명)의 설립이 허가되었다.⁸⁾

8)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는 <부록1>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

<표 III-6> 전국사 설립현황

구분	설립일	납입 자본금 (억원)	설립시 주주수	대주주	소재지
대신생명	89.6.20	100	9	대신증권	서울
태평양생명	89. 8.4	100	85	태평양화학	서울
국민생명	89.8.22	100	76	동아투자금융	서울
한덕생명	89.8.31	100	8	국제화재, 대한전선	부산
한국생명	89.11.9	100	9	대한화재	서울
신한생명	90. 1.4	100	56	신한은행	서울

자료 : 생명보험협회(2000)을 중심으로 정리

라. 지방생명보험회사의 설립

지방 생명보험회사는 지방 경제의 발전과 경제의 집중력 완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30대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배제하였으며 본사는 수도권 이 아닌 직할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발기인 대표는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정했으며 지방생명보험회사의 재산운용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역을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허가 기준에 따라 9개의 지방 생명보험회사(부산, 대구, 광주, 대전, 중부, 경남, 전북, 충북)가 설립되었다.

<표 III-7> 지방사 설립현황

구분	설립일	납입자본금 (억원)	설립시 주주 수	주요 주주	소재지
부산생명	88.2.22	60	1,344	자유건설, 부산은행	부산
대구생명	88.3.8	60	102	금복주, 대구은행	대구
광주생명	88.4.1	60	49	광주은행	광주
대전생명	88.3.7	60	34	태평양화학, 충청은행	대전
중부생명	90.1.8	60	113	개인 주주	인천
경남생명	90.1.31	100	563	개인 주주	마산
전북생명	90.2.20	100	344	백양, 전북은행	전주
충북생명	90.8.14	100	793	개인 주주	청주
한일생명	93.8.7	100	-	개인 주주	춘천

자료 : 생명보험협회(2000)을 중심으로 정리

2. 퇴출 관련 재무건전성 규제의 변화

퇴출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는 크게 합병과 인수(M&A), 자발적 퇴출(voluntary exit) 및 감독당국에 의한 비자발적 퇴출(involuntary)과 관련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 생보시장 비자발적 퇴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규제를 중심으로 보험시장 개방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가. 1986년-1989년: 시장 퇴출에 대한 선언적 명령권

1980년대 중반이후 시장개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진입 규제의 적절한 개정 및 진입 생명보험회사의 효과적인 선별에 정책적 역량을 결집시켰다. 당시 보험시장 퇴출에 대한 규제로는 정부의 포괄적인 명령권이 보험업법 제6조 및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지급여력과 같은 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적으로 유럽에서는 1979년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여력제도가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 영국은

1982년 지급여력제도를 명문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까지 보험감독청장협의회인 NAIC에서 IRIS라는 비율분석을 통해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별해서 각 주에 추가적인 조사를 통보하는 방법과 함께 각 주보험감독청에서는 각종 재무비율 지표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했었다. 미국 NAIC가 RBC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0년 이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보험회사나 은행은 물론 정부도 '금융기관의 부실에 의한 공적자금 투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인식만 있는 상태여서 보험회사에 대한 시장 퇴출이나 지급여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사실상 부재하였다. 다만, 보험업법 등에 선언적인 규정이 있었는데 보험업법 제6조 제3항은 '재무부장관은 보험회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 자산상태, 시장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증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험업법 제15조는 재무부장관의 명령권을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재무부장관은 보험회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의 재산의 위탁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법적 명령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발동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업자에 대한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가 적었으며 또한 감독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여 남용의 여지가 있었다.

나. 1990년 3월: 담보력 확보기준 제시

신설사 진입 후 외형경쟁에서 비롯된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이 취약하게 되면서 정부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의 일부로 1991년 4월 1일 담보력 확보기준을 제정하였다.

동 기준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말 K율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확정배당소요액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 없는 회사는 총자산(이연자산포함)이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보다 '91사업연도에는 30억원을 초과, '92사업연도에는 50억원을 초과, '93사업연도에는 100억원을 초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차배당과 사차배당을 정해진 기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외에 보험회사에 대한 특별한 제재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설사의 경영진들도 안정적인 회사 경영보다는 외형성장에 중점을 둔 보험영업 경쟁에 치중하여 신설사의 지급여력은 더욱 악화되게 된다.

다. 1994년: 지급여력제도(지급능력에 대한 규정)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는 1994년6월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서 구체화되었다.⁹⁾ 정부는 보험업법 제6조, 제15조 및 제98조에 의거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충실화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회사 경영상태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동 규정은 지급여력기준이 매사업연도말 100억원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감독원장은 지급여력이 기준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증자권고를 받은 회사가 이행기간 내에 증자 등의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9)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이란 현재의 부채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을 의미하는 지급능력(Solvency)을 초과하는 순자산을 의미한다. 즉, 지급여력은 책임준비금 등의 부채를 초과한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지급능력을 일컫는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보한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가격의 부적정성, 거대재해의 발생, 자산운용수익의 하락 등의 이유로 예상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간의 괴리에 대비한 충격 완화 장치, 즉 지급여력이 필요하다.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여력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해약환급금식을 초과하여 적절한 보험료 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보험업 제97조 준비금, 대손충당금, 사업비절감액으로 하며, 사업비절감액은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의 이연처리된 사업비와 재산관리비의 합계액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 감소액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지급여력이 기준보다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대하여 감독당국은 지급여력 확보를 위해 증자 등의 권고(매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증자권고를 받은 회사가 증자를 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은 증자명령을 할 수 있으며, 증자명령의 이행기간은 회사가 그 명령을 받은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까지 하도록 하였다. 한편, 증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 내용은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III-8> 지급여력 부족 규모에 따른 제재조치(1994. 6)

지급여력 부족규모	제재방법
100억원 미만	○ 계약자배당 제한
100억원 이상 ~ 600억원 이하	○ 계약자배당 제한 ○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경고, 보험회사업의 일부제한(규모제한)
600억원 초과	○ 계약자배당 제한 ○ 보험회사업의 일부정지(종목제한) ○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권고

이러한 규정을 기준으로 정부는 FY93 결산 결과를 기초로 1994년 재정적으로 부실한 보험회사에게 증자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는데 그 당시에 증자명령을 받은 회사들은 이로부터 4~6년 후에 대부분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된다.

<표 III-9> FY93년 지급여력 기준 미달사 현황

회사명	증자권고액 (억원)	증자액 (억원)	정부 조치	98년이후 퇴출 여부
동 아	258	100	증자명령	00년 피합병 - 금호생명
아 주	100		증자명령	96년 대주주변경 - 금호
중 앙	277		증자명령	97년 피인수 - SK그룹
한 신	36	62	-	98년 계약이전 - 교보
태 양	18	50	-	98년 계약이전 - 흥국
한 일	10		-	04년 피인수 - 국민은행
국 민	324		증자명령	00년 피합병 - SK생명
대 신	343		증자명령	03년 피인수 - 녹십자그룹
태평양	303	50	증자명령	00년 피합병 - 동양생명
한 국	345		증자명령	01년 계약이전 - 대한생명
한 덕	335		증자명령	00년 계약이전 - SK생명
동 부	20	202	-	생 존
코오롱메트	144	200	-	생 존
계(13개사)	2,513	664		

자료 : 생명보험협회(2000)를 중심으로 재정리

흥미로운 사실은 지급여력이 미달한 13개 회사중 현재까지 생존한 회사는 당시 정부에서 권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자한 동부생명과 코오롱메트(현재, 메트라이프)뿐 이었다.

라. 1996년: 지급여력 규정 개정

다수의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96년 2월 기존의 지급여력 제도를 사실상 완화하여

개정했는데 이 개정의 주된 내용은 최저 지급여력기준의 정률화, 지급여력항목의 변경 및 추가, 그리고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른 제재단계의 세분화이다. 즉 최저 지급여력기준은 기존의 100억원에서 책임준비금의 1%로 변경되었으며, 지급여력 인정항목은 기존의 사업비 절감액을 초과사업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절감액으로 변경하였으며, 금리연동형상품 감소율에 해당하는 보험료 감소액을 지급여력으로 추가하였다. 특히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른 제재단계도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였다.

<표 III-10> 지급여력제도의 보완 (1996. 2)

1996년 제도 변경 전	1996년 제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지급여력기준 : 100억원 ○ 지급여력인정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절감액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 제재단계 :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지급여력기준 : 책임준비금의 1% ○ 지급여력인정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사업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절감액 · 금리연동형상품 감소율에 해당하는 보험료 감소액 ○ 제재단계 : 5단계로 확대

개정된 제도에 의하면 지급여력 부족에 따른 단계별 제재내용(증자 명령 불이행규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II-11> 지급여력부족규모에 따른 제재조치(1996. 2)

지급여력 부족규모	제재방법
100억원 미만	○ 대표이사 경고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기관경고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계약자배당 제한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이하	○ 보험회사업 규모제한
1,000억원 초과	○ 보험회사업 종목제한 ○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권고

한편, 정부는 지난 '95년 증자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계약자배당 제한조치를 내리는 등 새로운 지급능력규정에 의거하여 증자를 이행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마. 1998년 6월: 적기시정조치 기준 도입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말 이후 지급능력(여력)제도는 보험감독규정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개정에 따라 부실 보험회사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였는데 보험감독규정도 재무건전성 감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재무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지급여력 규제 방식을 종전의 금액기준(지급여력 부족액 기준)에서 비율기준(지급여력 비율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은 1998년 6월 '보험감독규정'으로 통합되면서 지급여력에 대한 기준이 매 사업년도말에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항목의 합/계약식 준비금)이 0%를 초과하도록 변경되었다. 지급여력에 포함되는 항

목으로는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해약환급금식 보험료 적립금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 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법 제97조 준비금 및 후순위차입금이였다. 지급여력 부족비율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부족비율이 0-1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10% 이상 - 20% 미만의 경우 경영개선요구, 20% 이상인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바. 1999년 5월: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 도입

종전의 0% 이상의 지급여력 확보기준을 지급여력 기준금액의 100%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하도록 강화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 시 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지급여력 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생명보험회사에는 '경영개선권고', 0%이상 50%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생명보험회사가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추가지급능력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지급여력제도를 EU방식을 골격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2000년 8월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0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급여력제도 적용 대상 회사를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점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외국사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납입방법을 신설하고, 국내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 지점에 대해서도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국내 재산 보유에 관한 규정을 보험업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해서였다.

사. 현행 퇴출 제도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1999년 도입된 EU방식의 비율규제를 골격으로 하였는데, 이하에서는 현행 퇴출 제도의 기본 틀인 지급여력제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현재 보험회사의 퇴출에 대하여 보험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3조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31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에서는 보험업법 제123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첫째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둘째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셋째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보험업법시행령 제66조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4, 15, 16조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와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현재의 경영실태평가제도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영평가제도를 리스크 중심의 CAMEL 방식으로 개정한 것이다. 평가항목은 기존의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에서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항목별 비중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급여력 30점, 자산건전성 20점, 경영관리 15점, 수익성 20점, 유동성 15점이다. 여기서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수익성과 유동성은 계량적으로 평가하지만 경영관리 부문은 비계량적으로 평가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부실한 보험회사에 대한 단계적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제7-17조

에서는 경영개선권고를, 제7-18조에서는 경영개선요구를 그리고 제7-19조에서는 경영개선명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¹⁰⁾

<표 III-12> 재무건전성(지급여력) 규제의 주요 변화

구분	관련 규정	세부 내용
90년 이전	보험업법 제6조와 제15조	부실 보험회사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명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없음.
90.3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준칙>의 일부로 제정	매사업년도말 일정금액 이상의 담보력을 확보해야 계약자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94.6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제정	최초로 지급여력제도 도입 및 인정항목 신설 매사업년도말 100억원 이상의 지급여력 확보 의무화 미달금액에 따른 3단계 제재조치
96.2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개정 - 지급여력 기준 완화	매사업년도말에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의 1% 이상”의 지급여력 확보 의무화
98.6	보험감독규정으로 통합 적기시정조치 기준 도입	제25조(지급여력 확보기준)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0%를 초과 하도록 의무화 부족 비율: 0-10%미만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부족 비율: 10-20%미만의 경우 경영개선요구 부족 비율: 20% 이상의 경우 경영개선명령
99.5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 도입	중전의 0%이상의 지급여력 확보기준을 지급 여력기준(100%)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하도록 강화 부족 비율: 50%-100미만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부족 비율:0%-50% 미만의 경우 경영개선요구 부족 비율: 0% 미만의 경우 경영개선명령
00.8	지급여력 적용 대상회사 확대	외국 생명보험회사 국내지점도 지급여력비율 적용
현재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및 명령권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 명기 경영실태평가 기준과 방법 및 적기시정조치규정 경영실태평가 평가 항목과 가중치 규정

10) 적기시정조치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부실징후 단계에서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강동수, 2004)

<표 III-12>는 1980년말 이후 지급여력을 중심으로 한 재무건전성 규제의 변천 과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현행 보험회사 자기자본(지급여력) 규제가 보험회사의 주요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리스크기준자본금(RBC) 형태로 개선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¹¹⁾ RBC 제도에는 보험회사의 주요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같은 기술적 이슈와 자기자본 규제를 얼마나 엄격하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감독적인 이슈가 있다. 후자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불불능 확률을 제로로 만들 정도로 요구 자기자본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만 적어도 이 지불불능 확률이 국제적 정합성을 가질 정도(예: 1%미만)로 규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본다.(IAA, 2004)¹²⁾

3. 퇴출 생명보험회사 분석

이하에서는 1997년 이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에서 퇴출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추이를 분석하고, 퇴출 신설사와 생존 신설사의 재무건전성을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퇴출 생명보험회사의 소유구조 등 특성을 살펴본다.

가. 퇴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추이 분석

1997년 이후 비자발적 퇴출을 결정하는 핵심적 지표는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이었으며 현재도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

11)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논의는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금융감독원(2004(a), 2004(b) 및 IAA(2004) 등을 참고할 것.

12) FSA(2005)는 stress test에 의해서 계산되는 보험회사의 ECR(Enhanced Capital Requirement) 수준은 한해동안 재무건전성(Solvency)이 신뢰도 99.5%로 확보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보험회사의 요구자기자본(Required Capital)에 대한 이론 및 현실적인 자세한 논의는 (IAA,2004)를 참고할 것.

전성을 함축한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1994년 지급여력제도 도입 당시 지급여력 기준은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매사업연도말 현재 100억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지급여력 인정항목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해약식 이상 보험료적립금, 법제97조 준비금, 계약자 미할당 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및 사업비절감액으로 구성되었다.

<표 III-13>은 FY93년부터 FY97년까지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추이를 보여주는데 그 중 FY93과 FY94의 지급여력은 1994년 6월 도입된 규정에 의거해서 계산되었다. 1996년 2월 지급여력제도가 개정되면서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억원 이상이었던 기존의 지급여력 기준을 책임준비금의 1%로 정률화 하였다. 이 조치로 영업 규모가 크지만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았던 동아생명은 엄청난 증자 부담을 안게 된다.¹³⁾ 지급여력 인정항목에 금리연동상품 감소율을 추가한 것은 내실 경영을 유도하려고 한 정책적 의지로 보인다. 당시 지급여력 인정항목으로는 자본금, 잉여금, 해약식준비금 이상 보험료적립금 등이 있었으나 신설사의 경우 이러한 항목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서 신설사의 경영 개선을 유도할 항목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초과사업비 감소분을 인정해줌으로써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금리연동형상품 판매비중 감소율을 인정함으로써 당시 신설사의 금리연동형상품(노후복지, 새가정복지, 종업원퇴직보험)의 비중이 과다하여 금리리스크를 줄이도록 유도하였다.

1996년 개정안은 지급여력 부족규모에 따른 제재조치를 완화하였다. 종전 규정에는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계약자배당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제재조치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종전 규정에는 지급여력 부족규모가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업의 일부정지(종목제한) 및 회사 합병(또는 정리권고)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1996년 개정안에서는 부족 규모가 500억원

13) 동아생명의 지급여력 부족액은 FY94년 173억원에서 FY95년 3,747억원으로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다.

이상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업 규모 제한으로 제재 조치를 완화하였고, 부족분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회사업의 종목제한과 회사 합병(또는 정리권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재 조치를 완화하였던 것은 1995년 당시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종전의 지급여력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FY95년 말에는 다수 신설사의 지급여력 부족액이 600억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신설사에게 그 정도의 증자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증자가 불가능한 경우 다수의 신설사가 M&A 또는 계약이전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데 당시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집단적 퇴출이 몰고 올 정책적 부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Y95년 총 지급여력 부족액은 12,039억원으로 FY94년의 2,443억원에 비해 무려 6배 가량 증가했지만 제재조치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당시 합병 또는 정리권고를 받은 보험회사는 없었다. 다만 지급여력이 부족한 17개 회사에 대해서는 증자명령이 내려졌다.¹⁴⁾

14) FY93 결과 증자명령 = 동아, 아주, 중앙, 국민, 대신, 태평양, 한덕, 한국,

FY94 결과 증자명령 = 동아,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동양, 아주, 중앙
증자권고 = 신한, 조선, 한신

FY95 결과 지급여력이 부족한 17개 생명보험회사에게 증자명령을 내림.

FY96 결과 지급여력이 부족한 18개 생명보험회사에게 증자명령을 내림(97년 8월)

FY97 결과 정부는 지급여력이 부족한 15개사와 잠정적으로 지급여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회사(신한, 대신, 한일) 3개사에게 경영정상화계획 제출을 요구함(98년 6월)

<표 III-13>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 부족액 추이

(단위: 억원)

연도 회사	FY93 ¹⁾	FY94 ¹⁾	FY95 ²⁾	FY96 ²⁾	FY97 ²⁾
동 아	258	173	3,747	3,178	3,858
대 신	343	546	910	954	(51) ³⁾
태평양	303	129	551	877	433
국 민	324	257	620	1,076	463
한 덕	335	362	757	751	426
한 국	345	443	972	1,386	462
신 한	-	(29) ³⁾	400	551	(239) ³⁾
동부애트나	20				
동양베네펠트	-	123	939	220	767
코오롱메트	144		9	920	
고 려CM			267	591	911
삼신올스테이트					
부산(한성)	-		111	253	345
대구(조선)	-	(17) ³⁾		274	389
광주(아주,금호)	100	93	388	431	248
대전(중앙,SK)	277	317	583	376	577
경남(대일, 두원)			235	287	470
중부(국제)			496	869	2,939
전북(한신,BYC)	36	(99) ³⁾	589	653	973
충북(태양)	18		465	758	958
한 일	10				(15) ³⁾
지급여력부족액 합 계	2,513	2,443	12,039	14,405	14,219

주 : 1) FY93과 FY94는 94년에 제정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결과임.

2) FY95, FY96, FY97은 96년 2월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

3) ()은 지급여력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지만 향후 이 회사들은 지급여력 부족이 우려되어 정부로부터 제재받은 회사. FY94는 증자권고, FY97은 경영정상화계획의 징구대상이 됨.

자료 : 보험통계연감 및 생명보험협회 자료를 활용 또는 근거로 계산.

나. 퇴출 신설사와 생존 신설사의 재무 건전성 비교

생명보험 사업은 인수이익(underwriting profit)측면에서 예상손실과 실제손실이 일치하는 대수의 법칙을 달성하고 비용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사업 규모를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 많은 신설사가 단기간에 최소효율 규모나 대수의 법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출극대화 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경영전략은 신설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신계약비와 같은 보험영업 비용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즉시 집행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신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계속 적립해야 것이 더 무거운 부담이었다.

<표 III-14> 기존사의 준비금 대비 실재자산 비율(%)

구 분	생보시장 진입연도	1988년	1992년	1996년
대한 ¹⁾	1946	100.99	101.94	102.64
제일	1950	102.09	102.78	103.41
삼성(동방)	1957	104.24	103.83	103.12
흥국	1950	101.83	101.62	102.92
교보(태양)	1958	106.73	105.41	105.58
동아 ²⁾	1973	95.88	99.44	92.73

주 : 1) 대한생명은 1999년 금감원의 실사 및 특별검사 결과, 1998년 12월 현재 순자산 부족액이 약 2.9조원으로 나타나 표의 비율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2) 동아생명은 1999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퇴출함.

1962년 보험업법 제정시부터 보험회사 설립비용과 처음 5사업년도의 사업비는 회사 설립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매년 그 일부를 상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규정은 보험회사업 초기의 과도한 사업비가 보험회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여 상법 제453조가 정하

는 5년 이내 균등액 이상의 상각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설립비용과 사업비 상각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완화한 것이다(노상봉과 홍범식, 1995). 이 규정은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장점은 있으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1988년 당시 기존 생명보험회사들은 동아생명을 제외하면 이론적인 최소효율 규모를 달성하거나 근접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 -14>는 기존 생명보험회사의 해약식 책임준비금 대비 실재자산 비율을 보여주는데 재무 부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동아생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100%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아래에서 논의할 퇴출 신설사는 영업 8년차의 경우 이 비율이 80%를 넘지 못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II장에서 논의했듯이 1990년 이후 부실 생명보험회사와 정상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비교는 이순재와 김재현(2003)과 금감원(2003)에서 연구된 바 있다. 이순재와 김재현(2003)은 효력상실 해약율과 부채구성 안정성을 생명보험회사의 파산 원인으로 가장 유의성이 큰 변수로 보고했다. 금융감독원(2003)은 부실 생명보험회사가 이익창출능력(ROA)과 자본조달능력(자본금/수정총자산)에서 정상회사에 비해 각각 7.0%p와 7.4%p 저조한 것으로 보고했다. 나아가 부실 생명보험회사중 소형사는 보험영업 부문의 부실기여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횡단면 접근방법과는 달리 1980년대말 시장에 진입한 생명보험회사중 부실 때문에 퇴출한 생명보험회사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생존한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추이를 비교한다. 생명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시점부터 이들의 퇴출시점인 9차년도 또는 10차년도 까지 두 집단의 추이를 비교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해약식 책임준비금 대비 실재자산비율(이하 실재자산비율)을 사용한다.¹⁵⁾ 실재자산은 총자산에서 이연자산을 차감하는데, 이

15) 추이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지급여력은 우선순위였지만 지급여력(비율)에는 순

연자산은 사업비 등 이미 지출된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후 일정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으로 청산 기준에서 보면 가공 자산이기 때문이다.

<표 III-15>는 1988년부터 1990년 까지 생명보험시장에 진입한 생명보험회사의 실제자산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부실 퇴출 신설사는 이 시기에 진입한 생명보험회사중 시장에서 퇴출한 생명보험회사가 대상이며, 생존 신설사는 신설 생명보험회사중 시장진입 9년까지 비록 대주주 변경 등은 있었다고 공적자금 투여없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있는 신설 생명보험회사가 대상이다. 부실 퇴출 생명보험회사에는 다음의 12개사(외국사 포함시 13개)가 포함되었다. 지방사로 대구(조선), 경남(두원), 중부(국제), 전북(BYC), 충북(태양)이 포함되었고, 전국사로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이 합작사로는 고려CM, 삼신올스테이트 그리고 외국사로는 ALICO(AFLAC과 조지아는 통계 기간이 짧아 제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생존 생명보험회사로는 8개 회사(외국사 포함시 1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사로 부산(럭키), 광주(금호), 대전(SK), 전국사로 신한, 합작사로, 동부에트나, 동양베네프트, 코오롱메트, 영풍매뉴 그리고 외국사로는 LINA와 한국푸르덴셜이 포함되었다.

영업개시후 1-2년차는 생존 신설사가 퇴출 신설사보다 실제자산비율은 높지만 T검증 결과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¹⁶⁾ 3년차에서 생존 신설사(외국사 제외)의 실제자산비율 평균은 107.1%인 반면 퇴출 신설사의 실제자산비율(평균)은 97.8%로 실제자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이 발생한다. 3년차에서 퇴출 신설사와 생존 신설사의 평균에 대한 T검증 결과 P-Value는 0.0302로 평균 값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3년차 이후 생존 신설사와 퇴출

수한 'Solvency Margin'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정책적 유인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연구 기간 중 몇 번의 제도 개정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다.

16) 외국사들은 영업 초기에 보장성상품을 주로 판매하였거나 매우 보수적인 영업으로 <표 III-19>에서 보듯이 사업 6차년도까지 극히 높은 실제 자산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사들과 전혀 다른 양상임.

신설사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P-Value 5%이하로 지속적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재무건전성 차이가 사업 초기부터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은 표본의 수가 매우 한정된 상황(생존 신설사 8개, 퇴출 신설사 12개)에서 나타난 것으로 표본의 수를 확장하는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¹⁷⁾

퇴출 신설사는 8년차에 평균 비율은 78.5%(외국사 제외)로 이들 중 상당수의 회사는 9년차에 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 반면 생존 신설사의 경우에는 8년차(1988년에 첫 결산을 시작한 회사의 경우 1995년이 된다)의 평균 비율은 94.2%(외국사 제외)로 5년차 평균과 차이가 없다.

<표 III-15> 퇴출사와 생존사의 실재자산 비율 비교(%)

구분	비교1 (외국사 제외)			비교2 (외국사 포함)		
	생존 신설사	퇴출 신설사	T검정결과 P-Value	생존 신설사	퇴출 신설사	T검정결과 P-Value
1년차	413.9	245.3	.2294	32,367	246.3	.1319
2년차	115.5	106.4	.1180	2,987	111.6	.1315
3년차	107.1	97.8	.0302	834.6	109.8	.1328
4년차	101.0	89.6	.0072	293.9	95.2	.1237
5년차	94.1	86.4	.0221	197.7	91.8	.1237
6년차	96.3	85.3	.0044	146.4	91.0	.1052
7년차	94.7	83.7	.0101	111.8	90.0	.1524
8년차	94.2	78.5	.0159	96.9	83.9	.0728
9년차	94.4	NA	NA	95.9	NA	NA

주 : 실재자산비율 = (총자산 - 이연자산)/계약식 책임준비금
 자료 : 보험통계연감 (1988년 - 1998년)을 기준으로 계산

즉 생존 신설사는 회사설립 5년차 이후 증가 및 경영 내실화를 통해

17) 표본을 2년씩 묶어서(1-2년차, 3-4년차, 5-6년차, 7-8년차) 두 집단의 평균을 T검 증 한 결과 1-2년차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P-Value 1% 이하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실재자산비율을 94% 이상으로 유지했지만, 퇴출 신설사의 경우 시장 진입 이후 실재자산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존 신설사의 비율을 <표 III-14>의 기존사 실재자산비율(101%~107%)과 비교해보면 생존 신설사의 실재자산비율도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설립후 10년을 초과한 기존사는 총자산내 이연자산의 비중이 영(0)인 상태이지만 신설사는 이연자산이 총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I-16> 지방사의 실재자산 비율 추이(%)

구분	퇴출 지방사						생존 지방사			
	대구	경남	중부	전북	충북	평균	부산	광주	대전	평균
1년차	150.5	121.8	107.3	175.4	161.5	143.3	133.4	113.8	150.9	132.7
2년차	115.4	107.1	100.8	120.6	112.7	111.3	117.8	108.1	108.4	111.4
3년차	104.9	93.5	81.4	86.8	94.1	92.1	115.2	101.5	95.6	104.1
4년차	103.4	92.0	86.0	75.8	85.4	88.5	114.6	104.0	99.6	106.1
5년차	97.6	89.2	81.2	77.4	81.5	85.4	103.5	94.8	85.7	94.7
6년차	100.1	87.9	75.5	69.5	78.3	82.3	103.3	101.1	85.2	96.5
7년차	99.2	85.3	71.7	66.5	70.2	78.6	102.9	95.1	81.7	93.2
8년차	98.1	80.2	39.4	56.2	61.6	67.1	99.2	92.4	81.2	90.9
9년차	96.3	퇴출	퇴출	퇴출	퇴출		97.0	104.4	84.1	95.2
10년차	87.0						91.7	97.3	89.6	92.9

주 : 지방사중 1993년 설립된 한일생명은 통계기간(5년)이 짧아 제외했으나 퇴출한 지방사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줌.

퇴출한 지방사와 생존한 지방사의 3년차 비율은 각각 92.1%와 104.1%로서 차이는 보이기 시작한다.(차이 12%p) 4년차의 경우 퇴출 지방사는 88.5%, 생존 지방사는 106.1%로 그 차이는 18%p로 급격하게 벌어진다. 퇴출 지방사의 경우 시장 진입이후 실재자산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퇴출 직전인 8년차에는 67.1%까지 추락한다. 퇴출 지방사 중 특히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부생명(국제), 전북생명(BYC) 및 충북생

명(태양)은 9년차인 1998년에 계약이전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게 되고 대구생명(조선)은 2000년에 현대생명에 피합병 되면서 퇴출한다. 생존 지방사도 시장진입 이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10년차에는 92.9%를 기록한다. 즉 생존한 지방사도 기존사의 102-105%에 비하면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7> 전국사의 실재자산 비율 추이(%)

구분	퇴출 전국사						생존 전국사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평균	신한
1년차	108.5	113.4	43.5	122.1	1576.4	392.8	908.3
2년차	97.6	98.2	102.6	99.0	103.5	100.2	115.9
3년차	99.5	100.4	102.4	101.1	101.5	101.0	119.1
4년차	91.0	92.4	83.8	90.3	86.8	88.9	99.9
5년차	87.5	89.2	82.8	86.7	84.0	86.0	95.2
6년차	84.6	89.4	85.0	85.5	84.4	85.8	94.1
7년차	84.7	89.7	89.5	84.4	86.7	87.0	92.6
8년차	85.0	88.6	88.8	85.6	87.2	87.0	93.6
9년차	87.4	87.0	87.7	87.1	85.7	87.0	92.9

전국사는 신한생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장에서 퇴출하였고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퇴출한 전국사의 경우 결산 3년차에서는 실재자산비율이 101.0% 였으나 4년차에서는 급격하게 하락하여 88.9%로 나타났다. 5년차에는 퇴출된 모든 전국사의 실재자산비율은 80%대로 하락한다. 그후 실재자산비율은 특별히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90%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여 부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하다가 이후 퇴출되게 된다.

신설 생명보험회사중 퇴출 합작사와 생존 합작사의 비율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생존한 합작사는 3년차 실재자산비율이 106.3%, 4년차에는 97.4%로 하락하여 그 후 93%~97% 범위를 유지한다. 반면 퇴출한 합작사중 삼신올스테이트는 8년차까지 합작사 중 높은 수준의 실재자산 비율을 유지했으나 9년차(FY97년)에는 67.7%로 수직 하강하게 된다.

<표 III-18> 합작사의 실제 자산 비율 추이(%)

구분	퇴출 합작사			생존 합작사				
	고려 CM	삼신 Allstate	평균	동부	동양	코오롱 메트	영풍 매뉴	평균
1년차	143.3	125.5	134.4	115.5	109.8	115.1	1664	501.1
2년차	107.9	111.5	109.7	99.9	97.5	103.2	173.6	118.5
3년차	96.9	111.2	104.0	100.19	99.6	95.6	130.0	106.3
4년차	85.8	102.9	94.3	96.1	86.7	89.1	117.7	97.4
5년차	80.1	99.4	89.7	94.2	83.1	86.4	109.8	93.3
6년차	85.1	97.9	91.5	100.4	87.6	92.0	107.1	96.8
7년차	79.0	97.3	88.2	98.9	87.6	92.2	106.3	96.2
8년차	73.3	98.2	85.7	98.2	88.5	92.9	107.2	96.7
9년차	58.6	67.7	63.2	97.3	88.1	96.8	NA	94.1

그 후 삼신올스테이트는 실질적인 모기업인 대우그룹의 부도 및 외국계 합작 파트너였던 올스테이트 생명이 철수하게 되면서 2000년 6월에는 지급여력비율이 무려 -1,414%로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 고려CM(고려생명)의 경우는 실제자산비율이 4년차부터 지속적으로 합작사 중 가장 낮아 진작부터 시장 퇴출 위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외환위기와 함께 모기업이 위태로워지면서 회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표 III-19> 외국사의 실재자산 비율 추이(%)

구분	퇴출 외국사			생존 외국사		
	AFLAC	Georgia	ALICO	ALICO	프루덴셜	평균
1년차	31,800	24,243	252.6	252.6	320,233	160,180
2년차	1,735	392	173.9	173.9	28,830	14,474
3년차	퇴출	퇴출	254.1	254.1	7,382	3,744.5
4년차			162.2	162.2	2,018	1,065
5년차			157.0	157.0	1,115	612.3
6년차			159.4	159.4	583	346.6
7년차			165.8	165.8	305.9	180.4
8년차			148.4	148.4	107.2	107.8
9년차			퇴출	-	-	

시장에서 퇴출한 외국사는 실재자산비율이 140%를 상회하는 양호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했고 시장에서 생존한 외국사의 경우에도 시장 진입후 국내사에 비해 높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 외환 위기 이후 국내 시장 점유율을 대폭 증가시키는 계기가 된다.

<표 III-20> 생명보험회사 퇴출 현황과 공적자금 투여 여부

설립시 구분 (93년까지)	퇴출 현황(M&A, 계약이전)	퇴출시 공적자금 투여	퇴출시 공적자금 비투여및 대주주 변동	대주주 변동없이 생존
기존사(6개) 대한, 흥국, 제일, 삼성, 교보, 동아	동아: 00년 금호에게 피합병 대한: 99년 국영화 제일: 99년 알리안츠에 인수	대한, 동아	제일	흥국 삼성 교보
전국사(6개) 국민, 신한, 한덕, 대신, 한국, 태평양	국민과 한덕: 00년 SK에 피합병 한국: 01년 대한생명에 계약이전 대신: 03년 녹십자그룹에 인수 태평양: 00년 동양에 피합병	국민, 한덕, 한국, 대신, 태평양	-	신한
지방사(9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중부, 경남, 전북, 충북, 한일	대전(중앙): 97년 SK 인수 대구(조선): 00년 현대에 피합병 중부(국제): 98년 계약이전 경남(두원): 99년 계약 이전 전북(한신, BYC): 98년 계약이전 충북(태양): 98년 계약이전 한일: 04년 국민은행 인수	대구, 중부, 경남, 전북, 충북, 한일	부산(럭키) 광주(금호) 대전(SK)	없음
합작사(7개) 동부애트나, 동양베네피트, 코오롱메트, 삼신올스테이트, 고합뉴욕, 고려CM,영풍매뉴	고려(고려CM): 98년 계약이전 삼신(삼신올스테이트): 01년 계약이전	고려CM 삼신올스테 이트	영풍매뉴(PCA) 동부애트나 동양베네피트 코오롱메트 고합뉴욕	없음
외국사(7개) ALICO, Georgia, 네덜란드, AGF, AFLAC, 라이나, 푸르덴셜	ALICO: 97년 계약이전 Georgia: 92년 계약이전 AGF: 03년 대주주변경 AFLAC: 91년 계약이전	공적자금 투여 없음	ALICO Georgia AFLAC	ING(네덜 란드) 라이나 푸르덴셜 프랑스

다. 퇴출 생명보험회사의 질적 분석

(1)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소유 구조와 시장 퇴출

국내 생명보험회사중 공적자금 투여되면서 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출한 생명보험회사와 시장에서 생존한 생명보험회사와의 소유구조 차이를 나타내면 <표 III-21> 과 같다. 먼저 생명보험회사의 모기업을 재무구조가 정상적인 기업과 부실한 기업으로 나누었고, 모기업이 정상적인 경우를 모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시 30대 대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었다.

<표 III-21> 모기업 특성과 신설사 생존 현황

모기업 재정상태	모기업 규모	생존 기업	퇴출 기업(공적자금 투여)
정상	30대 대기업 집단 소속임	아주(금호, 10) 동양베네페트(동양, 30) 동부애트나(동부, 27) 한성(LG, 4) 코오롱메트(코오롱, 19) 뉴욕고합(고합, 11) 중앙(SK, 6)	
	기 타	신한(신한은행) 영풍매뉴(영풍, 42)	국제(대한방직), 태양(임광토건) BYC(BYC), 한덕(대한전선, 36) 국민(개인), 태평양(태평양, 62) 대신(대신증권)
부실	규모가 혼재됨		한국(현대,1), 삼신(대우관련, 3) 한일(쌍용관련,7),조선(갑을, 23) 고려CM(고려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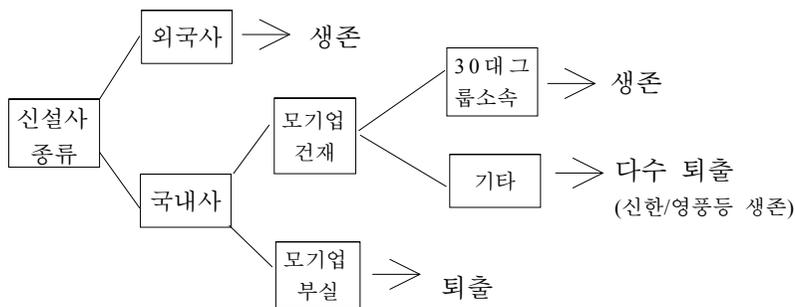
주 : * 괄호내 순위는 '98.10.24 현재 금융감독원의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 순위임

위의 <표 III-21>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림III-1>로 나타낼 수 있다. 신설사중 외국사(지분 100%를 외국기업이 소유)는 모두 '생존' (normal)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현재까지 생존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약이전 등의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퇴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사 중에서 모기업이 부실했던 생명보험회사는 전부 공적자금이 투여되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출되었다. 모기업 부실화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보험회사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예: Best, 2003, 2004 등) 비록 모기업의 재정상태가 정상이었다고 하더라도 30대 대기업기업집단에 포함될 정도로 규모가 컸던 모기업에 속했던 생명보험회사는 생존할 수 있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모기업에 소속했던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수가 비자발적으로(사후적으로 공적자금 투여) 퇴출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규모가 작은 그룹은 자회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자금 지원을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기업이 30대 그룹사는 아니었지만 재정적으로 우량했던 신한생명은 생존했고,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유지한 영풍의 경우는 공적자금 투여없이 타 보험회사에 인수되었다. 위의 결과는 모회사의 재무 상태가 자회사인 생명보험회사 생존에 결정적 변수이며 나아가 모기업의 규모도 자회사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III-1> 신설 생명보험회사 특성과 생존 및 퇴출 지도



(2) 합작사의 지분구조와 시장 퇴출

합작 생명보험회사는 국내 주주가 51%의 지분을 소유한(국내사 주

도 합작사) 동양베네피트, 국내 주주와 해외 주주의 지분이 각각 50% (국내사와 외국사 동등 지분)인 동부AXA, 고려CM, 삼신올스테인트, 영풍메뉴라이프 및 해외 주주의 지분이 51%(외국사 주도 합작사)인 코오롱메트와 고합뉴욕 세 종류로 나타났다. 향후 증자 등 소유구조 변화에서 지분의 과반수를 차지한 측이 자연스럽게 상대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동양베네피트는 순수 국내사인 동양생명으로, 코오롱메트와 고합뉴욕은 100% 해외 주주인 메트생명과 뉴욕생명으로 소유구조가 변했다. 양 파트너의 지분이 동일한 합작사의 경우 증자 등 소유구조 변화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증자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늦을 수 있는데 실제 일부 합작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증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양 파트너간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합작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표 III-22> 합작사의 지분구조와 퇴출 여부

구 분		국내사 지분 (%)	해외사 지분 (%)	퇴출 여부	진행 과정
국내사 주도 합작사	동양 베네피트	51	49	생존	동양그룹에서 외국지분 인수
	동부에트나 (AXA)	50	50	생존	동부그룹에서 외국지분 인수
국내- 외국사 동등 지분	고려CM	50	50	퇴출	90년 합작사는 영국CM으로 변경 95년 고려생명으로 사명 변경 모기업인 고려증권의 시장퇴 출로 동반 퇴출
	삼신올스 테인트	50	50	퇴출	실질적 국내 모기업인 대우그 룹의 부실과 올스테인트 철수 로 퇴출
	영풍메뉴 라이프	50	50	생존	99년 영풍에서 지분 인수, 01 년 영국 푸르덴셜이 인수하여 02년 PCA로 상호 변경
외국사 주도 합작사	코오롱메트	49	51	생존	메트라이프가 한국측 지분 인수
	고합뉴욕	49	51	생존	뉴욕생명이 한국측 지분 인수

(3) 대한생명의 부실화(공적자금 투입)

대한생명의 부실화(공적자금 투입)는 분식회계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97년까지도 대한생명은 국내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중 하나로 지급여력 등 재무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감독당국과 회계 감사법인은 보고했었다. 그러나 대한생명은 1998년 6월부터 추진한 Met Life사와의 외자유치 협상 및 실사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자 1999년 2월 금융감독원이 자산부채실사 및 특별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8년 12월말 기준으로 순자산 부족액이 약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대한생명의 자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제입찰을 통하여 매각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99년 9월 대한생명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자본감소명령이 내려졌고 예금보험공사는 순자산 부족분 3.3조원의 60%인 2조 500억원을 1999년 10월-11월에 걸쳐 출자하였다. 이후 대한생명의 재매각이 추진되면서 1조5천억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2002년 9월 23일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의 51%를 한화컨소시엄에게 8,236억원에 매각하였다. (김용우,2004)

<표 III-23> 대한생명의 부실 발생 원인과 손실 금액

부실 원인	손실금액 (억원)	비고
계열사 및 신규사업에 대한 부당 사업자금 지원 대출	22,665	대손예상액
은행주식 대량 매입·보유	2,917	경기, 서울, 제일,조흥은행
기부금 등 대가성없는 자금 사외유출	490	기독교 햇볕재단 등
미술품 등 비운용자산 구입	201	896점
대우그룹 신용대출	1,660	추정손실
부당 해외투자	2,000	해외파생금융상품 등
최순영 전 회장의 회사자금 임의사용	2,737	횡령, 법인세납부 등
대기업 부실대출	1,096	기아자동차, 진도 등
합 계	33,766	

자료 : 김용우(2004)

라.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퇴출 분석 종합

1980년대말 보험시장을 개방하면서 정부는 시장이 개방된 후에도 생명보험 시장은 '경쟁적 시장'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과거와 같이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비경쟁적 시장'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신설사 허가 기준은 금융산업 내 경쟁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미시적 적격성보다는 국가적 정책 목표 달성이라는 거시적 적격성에 비중을 더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설 생명보험회사가 무더기로 퇴출하면서 신설 보험회사 허가시 중요한 정책 목표였던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수도권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등은 애초 목표의 역방향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여 수십 개의 신규 생명보험회사를 허가했다면, 사후적 규제인 퇴출 및 재무건전성 제도를 강화해서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및 risk-taking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러한 제도 및 감독은 미흡했다. 분석 결과 퇴출 신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생존 신설사와 비교하여 실재자산비율로 검증한 결과 사업 개시후 3년 시점부터 퇴출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t검증 결과 5% 이내로 유의). 이 결과는 퇴출된 신설사에 대해서 사업개시 후 3년 시점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유구조 분석에서 생명보험회사 퇴출에 모기업의 규모와 재정상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은행과는 달리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생명보험회사는 산업자본이 지배하고 있어, 모기업의 흥망에 따라 계열기업인 생명보험회사의 존폐가 결정되었던 것이다.